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31
----------	-------

발의연월일 : 2025. 7. 17.

발 의 자 : 김도읍 · 구자근 · 백종현
박성훈 · 곽규택 · 이성권
인요한 · 이현승 · 조배숙
서지영 · 김미애 · 박수영
정성국 · 김대식 · 김희정
정동만 · 정연욱 · 조경태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기획재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는 단일차관제로 해양, 수산, 해운 · 항만의 등의 정책을 관장하고 있지만 해양, 해운 · 항만 분야에 조직의 기능이 집중되어 수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어업 총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수입규모가 수출을 압도하며 만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어가수도 급감하고 있으며 어촌은 초고령화 심화 및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수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식량 자원 확보, 해양 생태계보존,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 사업이지만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산업 쇠퇴, 국제 해상 질서 재편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에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하도록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수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에는”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행정각부) ① (생 략)	제26조(행정각부) ① (현행과 같음)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 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 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 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 부 · 보건복지부 · <u>국토교통부</u> 에	②----- ----- ----- ----- ----- ----- ----- <u>국토교통부 · 해양수</u> <u>산부</u> 에는-----.
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